제331회국회 (임시회·폐회중)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임 시 회 의 록)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4월6일(월)

장 소 제5회의장(220호)

의사일정

1.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경과보고
3. 특위 의사일정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활동기간 연장의 건 ····· 1
2.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경과보고 ····· 1
3. 특위 의사일정 결정의 건 ····· 7

(15시11분 개의)

○위원장 주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7차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활동을 종료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경과를 보고받은 후에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여야 간의 합의로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하는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을 반영하여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공적연금제도 간의 형평성 및 공무원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원칙과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등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그간의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성과를 마무리하는 실무기구의 활동과 병행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향후 특위 활동계획을 논의하고자 한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활동기간 연장의 건

(15시13분)

○위원장 주호영 의사일정 제1항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4월 7일 내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우리 연금특위의 활동기간을 5월 2일까지로 25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연장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경과보고

○위원장 주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그동안의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경과를 보고받고 이를 향후 우리 특위의 공무원연금법 심사 시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활동경과 보고는 그동안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활동상황을 정리해 온 대타협기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 오늘 있습니까?

○조원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없습니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타협기구 김요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요환 김요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2014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회의원 4인, 전문가 8인, 정부공무원 4인, 이해당사자 대표 4인, 이상 총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2015년 1월 8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3개월 동안 전체회의 6차, 공청회 3차, 3개 분과위원회 22차, 현장검증회의 1차, 실무기구회의 5차, 대표자회의 1차 등 총 38차의 회의를 하였으며 90일이 되는 3월 28일부로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3월 27일 마지막으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3개 분과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받는 등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결산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11개 항의 결과보고를 채택하였습니다.

결과보고에 적시된 바와 같이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공적연금제도 간 형평성, 공무원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원칙과 방향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둘째,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셋째,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5개 기초율과 부부공무원 비율에 대한 보정결과를 반영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모형을 공무원연금 추계모형의 기본모형으로 수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결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서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또한 국민대타협기구위원은 대타협 정신에 기초하여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으나 활동시한 종료에 즈음하여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합의안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공무원연금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진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기구를 구성하여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건의 및 요청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동 실무기구는 국민대타협 과정에서 제시된 제반 공무원연금개혁 방안 등을 정리하고 추가 논의하여 그 결과를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실무기구는 지금까지 국민대타협기구에 제시된 방안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단일 합의안 내용에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해서 지난주 4월 2일 양당 원내대표·부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상황을 전체회의, 공청회, 3개 분과위원회별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회의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제1차 전체회의에서 상견례를 갖고 공동위원장으로 조원진·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3개 분과위 공동분과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공무원연금제도 현황과 개혁 사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무원연금 등 3개 직역연금 재정현황과 전망, 보건복지부로부터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요를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질의 및 토론을 계속하였으며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인사혁신처로부터 그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내용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기금 운용 등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부기초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기초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급률을 현재직자의 경우 재직 1년당 1.5%, 새누리당안은 1.25%인데 더 낮추었습니다. 단계적으로 낮추고, 둘째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 납부 대신에 5년간 연금 인상을 동결하며, 셋째 연금수급자격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넷째 연금수급자 중 선거취임공무원, 전액정부출연기관 재취업자 외에 민간에 취업한 일정 이상 고액소득자에 대해서도 전액 연금지급을 정지하며, 그 외는 새누리당안과 내용이 같습니다.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3개 분과위원회 활동경과보고를 듣고 종합토의를 행하였습니다.

제6차 전체회의에서는 3개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듣고 11개 항의 결과보고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모두에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가 세 차례 공동개최한 사항은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분과위원회는 공무원연금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의원 2인, 공동분과위원장으로 조원진·강기정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전문가 4인, 정부공무원 2인, 이해당사자 대표 2인, 이상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2015년 2월 1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월 26일까지 총 9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의 향후 운영계획과 공청회 주제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추진자세 및 방식,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과와 미흡한 점, 직업공무원제와 교육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의 인사정책적 측면, 그리고 고용주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등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차 및 제3차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개혁의 추진자세 및 방식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과 국민, 그리고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하고 재정안정·국민연금과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노후생계보장과 공무원의 특수성 및 고용주로서 정부의 역할을 함께 고려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급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009년도 개혁의 성과를 정밀 분석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실질적 비교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부과 및 운영방식이 상이한데 서로 다른 운영 방식을 가진 제도에 대해 형평성을 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직업공무원제와 공무원연금의 인사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인사정책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부담금 추계 검토와 관련해서는 정부 보전금 도입의 정확한 입법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중간결과 발표문을 작성하였으며 이 발표문을 통하여 공무원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추구하며 공적연금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공무원인사제도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 합의하였으며, 2009년도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연금수급자·정부 간 고통분담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제5차 및 제6차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실행 방안과 관련해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정부가 제시한 기초안은 신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개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고 공무원연금 이해당사자 대표는 연금개혁의 실행 방안의 모수개혁적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제6차 회의에서 김태일 위원은 신규 임용

자의 경우에 새누리당안에 의하면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를 적용받게 되어 현행 제도에 비해서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아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저축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개인 약 4%, 즉 국민연금 기여율 4.5%를 초과하는 부분과 재직자의 기여율 인상분의 해당분, 여기에 더하여 정부 2% 매칭으로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용하는 개인저축계정에 적립·운용한 다음에 나중 퇴직한 후에 65세 이후부터 연금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소득대체율을 향후 민간 수준으로 인상되는 퇴직수당연금과 합쳐서 총 50% 후반대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7차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의 직업공무원제 특수성 반영 문제, 기존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의 분리 또는 통합 문제, 소득재분배 적용 문제, 기초연금과의 상호연계성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의 직업공무원제 특수성 반영과 관련하여 직업공무원제와 공무원연금개혁을 병행할 수는 있으나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인사정책적 보완책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존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의 분리 또는 통합과 관련해서 신·구 공무원의 분리는 공무원 집단 안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신·구 공무원을 분리하더라도 기여율 인하와 퇴직금 정상화 등을 통해서 실제 삭감률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신규 공무원의 기여율을 낮출 경우에 기금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상의 문제가 다시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소득재분배 적용과 관련하여 이 문제는 하후상박의 원리에 의거, 장점이 있다는 의견,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득재분배 적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과의 상호연계성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는 의견과 공무원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8차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보고를 받고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종합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보고한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는 향후 공무원단체와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9차 회의는 공무원연금분과위 마지막 회의로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종합 토의를 통하여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밤 11시 늦은 시간까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당은 기제출된 새누리당 안보다 개인저축계좌가 추가된 김태일 위원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3월 25일 새로 발표된 새정치민주연합안과 절충하여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당시 공무원단체의 이해당사자 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고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 반까지 이루어진 4인 전문가 위원들의 특별 논의에서도 합의안 도출이 이루어지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김용하 위원은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기여 율 4.5% 초과분에 대해서는 낸 만큼만 가져감으로써 추가 재정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라면 새누리당안의 핵심 내용인 구조개혁 내용 즉 신·구 공무원을 분리하고 신규 임용자에게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30년 재직 시에 50%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는 수지 균형 산식으로서 보험료율은 20%, 개인 10%, 정부 10% 부담으로 올리고 지급률은 재직 1년당 1.65%로 낮추는 수급구조, 즉 모수개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의 활동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분과위원회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2인, 공동분과위원장으로 김성주·김현숙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전문가 4인, 정부공무원 2인, 이해당사자 대표 2인, 이상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2월 1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월 26일까지 총 여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의 향후 운영계획 및 회의안건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제2차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체계의 비교·분석,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의 현황과 문제점 등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재분배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무원연금의 급여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과 보건복지부 및 인사혁신처 등의 업무보고에서 소득대체율을 제시할 때 각기 다른 기준을 사용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적정 노후소득 수준 및 공무원 노후소득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에 있어 연금액의 세전과 세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소득대체율의 논의에서 소득을 생애주기평균소득으로 볼 것인지 퇴직 전 최종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적정 노후소득 수준 및 공무원 노후소득 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사례가 있는지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과세에 따른 연금수급액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외 사례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제4차, 제5차, 제6차 회의에서는 여야, 정부, 공무원단체의 노후소득 수준에 대한 의견제시 및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노후소득 수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바 야당은 국제기구의 권고수준 등을 참고해 볼 때 소득대체율 50%가 적정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공무원단체는 적정 소득대체율을 60%로 제시하면서 노후소득 수준에 대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여당과 정부의 경우 직접적인 노후소득 수준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소득제고를 위한 방안 추진과 더불어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시에는 기여율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밖에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크레딧제도 도입, 사회보장사업 확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정 노후소득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를 제안하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의 결과 상당히 의견 차이를 좁힌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의견차를 확인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동 분과위 마지막 6차 회의에서 논의한 적정소득대체율에 대한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둘째,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단체는 60%, 야당은 50%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을 명시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일부 전문가는 보험료율 인상과 연동된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여당과 정부는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동 분과위 권한 밖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크레딧제도의 합리화와 확대에 대해서 공감하나 방식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습니다.

현행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제도에 있어서 내부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재원 부담의 주체, 시기 등에 있어서 위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 했습니다.

동 분과위원회가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공적연금의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한 것은 성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의 활동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분과위원회는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검증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2인, 공동분과위원장으로 김용하·이병훈 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정부공무원 2인, 이해당사자단체 2인, 이상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15년 2월 16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월 25일까지 총 7차례 회의와 1차례의 현장 검증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는 모두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3개 분과위원회 중에서 가장 전문적인 분야이면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중간에 제1, 2, 3, 4, 5차 회의까지의 전문가를 동원한 의견이 있었던 부분은 생략하고 결론 부

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페이지 중간입니다.

제6차 회의 현장검증회의, 공무원연금공단에서의 현장검증회의를 가졌습니다.

제7차 회의에서는 퇴직률, 사망률, 유유족률, 유족연금선택률, 퇴직연금선택률 등 이전 회의에서 제기된 5개 기초율과 정부의 장기 추세선에 대한 이견을 검토하였습니다.

5개 기초율에 대한 검토 결과 사망률은 공무원 생명표 대신에 국민생명표를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부부공무원 관련 기초율을 신설하는 등 현행 방식을 보완하여 재정추계에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장기 추세선에 대한 검토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 방법에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거쳐 동 분과위원회에서는 5개 기초율, 즉 퇴직율·사망률·유유족률·유족연금선택률·퇴직연금선택률과 부부공무원 비율에 대한 보정 결과를 반영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모형을 공무원연금 재정추계의 기본모형으로 수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추계 결과 표기 방법에 대한 논의에서 추계는 향후 70년까지 실시하고 결과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발표하며 추세선과 보수대비 연금급여 총액 비율을 병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당부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는바 연금충당부채의 법적 의미와 산정방식에 대하여 위원, 정부, 공무원단체 간에 이견은 없었으나 최근 언론 등에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것에 대하여 공무원단체는 유감을 표시하였고 향후 연금충당부채가 본래 국가회계법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제안하였고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국민대타협기구 경과보고를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결과보고서 10권, 총 2600페이지에 달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김요환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특위 대타협기구 직원 여러분, 우리 대타협기구 활동 지원하시느라 또 논의 내용을 요약하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가 많았습니다.

보고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위 소속 위원님 중에서 김도읍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문정림 위원이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문정림 위원 처음 출석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림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간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해 주셨던 김도읍 위원님을 대신해서 사보임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어렵고 무거운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그간에 노력해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문정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박명재 위원의 소개로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의 김기옥 회장과 유영번 사무총장의 방청을 허가해서 현재 방청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대타협기구 경과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특위 날짜가 짧은 시간에 고지되었고 보다 충실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차회 기일에 질의답변을 했으면 하는 양당 간사 간의 논의가 있어서 질의답변은 다음 회의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예,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오늘 의사일정에 보면 특위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있습니다. 이 특위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여야 간사 간에 우선 4월 10일 날, 대타협기구에서 올라온 자료에 대한 대체토론을 4월 10일 날 하는 일정을 하나 잡았는데요. 4월 2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 간의 합의사항은 오늘 특위의 의사일정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간에 내일 중으로 이 의사일정, 혹은 또 내일 정례 원내대표회의에서 이 특위에 대한 의사일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일 중으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실무기구에 대한 구성이 여야 간사, 우리 실무기구의 관할들이 좀 어정쩡해져서 대타협기구에서 조금 조정을 할 수밖에 없

을 것 같아서, 실무기구 구성이 거의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무기구는 원래 합의했던 7명에다가 공투본 소속 공무원단체 한 쪽이 더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공적연금 관련돼서는 여야에서 합의해서 한 사람 추천하게 돼 있는데, 두 사람 추천을 했는데 한 분은 행정체계에 대한 전문가시고 한 분은 또 예산에 대한 전문가라서 두 분을 다 넣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공적연금에 대한 전문가를 플러스 1명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기본 실무기구 구성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기구도 우리 특위의 일정 확정하고 맞물려서 내일 중에 가능하면 일정을 여야 간에 또 실무기구 구성원 분들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좀 잡아서 실무기구를 내일부터 가동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주호영 자, 그러면 실무기구 구성에 조금 확정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확정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 실무기구 논의와 우리 특위 활동 장차 계획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우선 차기 회의만 결정을 하고 자세한 특위 활동 결정은 내일 서로 더 확정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이지요? 그것은 간사님들 간에 서로 협의가 된 것이지요?

○강기정 위원 예.

○위원장 주호영 그러면 우선 오늘 의사일정으로 잡혀 있던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은 해 놓고 결정은 차기 회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3. 특위 의사일정 결정의 건

(15시41분)

○위원장 주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결정은 향후 우리 특위 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소속 위원님들 의정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의사진행발언과 양당 간사에게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실무기구 협의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의사일정 결정을 위해서 내일 더 논의를 하고 차회 기일에 확정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오늘 결정은 차회 회의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위원장님, 특위 의사일정을 결정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하는 걸로 했으니까……

○위원장 주호영 아니, 전체회의 확정인데, 전체회의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인데 우선 다음 차기 회의는 결정됐다 그러니까 제가 발표를 하고……

○강기정 위원 아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위 의사일정 결정이라는 것은 차기 회의 일정 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기 회의를 결정하시면 된다고, 이 안건은 그렇게 성립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차기 회의 일정은 또……

○위원장 주호영 특위 활동 결정의 건이 차기 활동만 아니고 전체 향후 일정 논의가 원래 포함된 안건이었어요.

○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위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다음 회의를 하시고 그 이후에 또 다음 회의 이후에, 우리가 지금 5월 며칠까지로 돼 있지요?

○위원장 주호영 5월 2일까지.

○강기정 위원 2일까지 될 때의 전체 일정은 또 의논해서 잡으면 됩니다.

○위원장 주호영 그것을 안 결정하고 두겠다는 겁니다, 상정만 해 놓은 상태로. 그것은 다시 논의가 되면 정해 가면 되고 다음 회의 날짜만 오늘 고지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기정 위원 아니, 그럴 이유가…… 별로 필요성이 없는데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주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는 4월 10일 오후 몇 시로 하지요?

○김성주 위원 오전 10시.

○위원장 주호영 오전 10시에 이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고 향후 나머지 특위 존속기간 내의 의사일정은 간사끼리 논의돼서 확정되는 대로 다시 이 특위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인사혁신처장님과 우리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셨는데 특별히 오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강기정 위원 제가 정부 측에 한마디만……

○위원장 주호영 예.

○강기정 위원 우리 실무기구에서 또 여러 가지 의논을 할 겁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는 지금 정부

가 내놓아야 될, 명료하게 내놓아야 될 게 몇 가지 안 있습니까? 인사 정책적 측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우리 야당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복지부·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나 인사혁신처 등이 빨리 협의를 하셔서 정부의 입장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특위에서, 그전에 대타협기구에서는 정부의 얘기를 사실은 듣기가 좀 모호한 구조였는데 이제 특위가 열린 만큼 금요일 같은 경우에 특히 인사 정책적 측면이나 소득대체율 이런 것의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셔야지 다음 수순으로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피하지 마시고 내놓으셔야 될 거라고 보고 그 점을 정부가 긴급히 좀 협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지금 존경하는 강기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정부의 인사 정책적 측면 이야기는 지난번 이야기와 같이, 대타협기구에서 얘기된 바와 같이 공무원단체와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요일이라면 불과 지금 3~4일 사이에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공무원단체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한 가지 여쭤 보면,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면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 통과 이후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그 사이에 진행상황을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이에 하시든 앞에 하시든 뒤에 하시든 정부 생각, 정부의 프로세스를 내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왜 그걸 뒤에 하냐, 앞에 하냐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막연히 공무원단체하고 하겠다, 내년에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5월 달에 연금 개혁을 한 이후에 하시겠다는 건지 전에 하시겠다는 건지 그 계획을 내놓으시라니까 자꾸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걸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계획……

○조원진 위원 제가 말씀……

○위원장 주호영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조원진 위원 인사혁신처장님, 우리 대타협기구에서 그때 합의를 봤을 때 내용을 잘 보시면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기구를 공무원연금 개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설치한다가 하나 있고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다음에 적정한 공무원의 인사 정책적 문제를 또 하나의 기구의 형태든 어떻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강기정 간사님 얘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하겠다, 이걸 내놓으라는 겁니다.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아, 일정을 말씀하시는……

○조원진 위원 내용을 지금 와서 다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내용이라는 것은 공무원단체 이해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러니까 일정을 어떻게 어떻게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큰 틀만 좀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는 하실 수 있지요,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공무원단체와 일정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 협의를 하셔서 좀 내놓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대타협기구에서 재정추계 모델이 나왔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다 궁금해하는 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궁금해하는 게 새로운 재정추계 모델을 여야 합의하에 만들어 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조원진 위원 대타협기구 전체가 합의해서 재정추계 모형을 만들어서 변수들도 대여섯 개를 바꿔 가면서 변수를 넣었는데 이제는 재정추계 모형에 따른 재정추계를 발표해야 됩니다.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조원진 위원 안이 나온 것은 나온 대로, 야당안이 없으면 야당안은 발표할 필요 없고.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조원진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안이라든지 정부 기초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김태일안 그리고 김용하안 그리고 공무원들이 데드라인을 정해 놨잖아요? 데드라인을 위에는

올리는데 밑에 일정 부분을 못 내리겠다, 그런 데드라인에 대한 안 이런 안들이……

우리가 모형을 만든 이유는 그 안들을 가지고 정확한, 합의된 모형을 가지고 그 안들에 대해서 재정에서의 건전성이 어떤 사항이 되고 지속성이 어떻게 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연금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는 혹시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들을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이제는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무기구에서 협의도 할 수 있고, 지금 이 내용을 아는 것은 정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조원진 위원 공무원단체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여야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이걸 가지고 실무기구에서 어떤 안이 좋은 건지 혹은 우리 이쪽 특위에서도 재정추계를 가지고 한 번 정도 또 토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조원진 위원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셔서 발표 시기를 정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좀 해 주세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조원진 위원 없는 야당안 가지고 알파·베타·감마, 알파·베타를 가정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야당이라도 기분 나쁠 거예요. 우리는 입장이 그게 아닌데 왜 너희 마음대로 발표하냐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빼도 돼요. 기존에 나온 것만 가지고 발표를 해 줘도 비교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장 주호영 다음, 위원님 중에……

○김성주 위원 위원장님!

○정진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호영 잠깐 우리 김성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 차례……

○정진후 위원 예.

○김성주 위원 특위가, 대타협기구에서 했던 합의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저희가 잠시 좀 쉬는 기간을 가졌고요, 대타협기구에서 단일한 합의안을 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죽 진행과정 속에서 여야 또는 정부·공무원단체 간에 상당히 큰 틀에 가까운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대타협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대타협을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주의입니다.

이제는 고용주로서 정부와 또 공무원단체가 실질적으로 내야 될 돈과 받으려고 하는 금액 사이에서의 타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노후보장과 재정 측면들을 철저히 고려해서 당사자들이, 공무원들이 내가 얼마나 더 내고 얼마를 받겠는가 또 정부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은 고용주로서 정부가 이제까지 책임 있는 안을 한 번도 내놓지 않고서 여당이 대신해서 안을 내놓고 그 뒤에 숨어서 정부가 책임 있는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더뎌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그것을 분명하게 공무원단체하고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려고 하는 의지를 실무기구 내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대타협의 전제조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공무원연금이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개편안에 합의가 된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의 노후보장 수준을 올리기 위한 국민연금 등의 상향 조정 그리고 그를 통한 공적연금의 강화에 대해서 또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해야 됩니다. 그 어느 하나만 하고 어느 하나가 안 되면 또 다른 반발이 생길 수 있고 이 대타협이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복지부장관께서 분명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 대타협기구를 만들고 대타협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했던 것은 공무원연금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 등을 우리가 손을 본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사각지대 해소 부분도 포함돼 있고 또 소득대체율의 상향 조정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다음번 회의할 때는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공무원연금특위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얘기가 안 된다면 역시 또 대타협의 두 번째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우리 복지부장관님께서는 국민들의 노후보장 연금제도를 책임지는 정부 측 대표자로서 다음번 회의에는 책임 있게 그 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사혁신처장님하고 장관님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겸허히 생각하고 앞으로 일의 추진에 반영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정부는 이 대타협기구의 성공을 위해서 사실적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충실한 정보의 제공과 전반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대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그다음에 간담회·설명회·현장확인 등을 거쳐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취합하여 정부의 기초 제시안에 이미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 노력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갖겠으며 나아가서 이번 실무기구를 통하여 공무원단체와 적극적인 상호 협력과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정부의 역할을 다했음을 보여 드리고자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문형표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지난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한 것으로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단일합의안이 마련될 경우에 공적연금의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이렇게 논의를 해 주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어떤 합의안이 마련되는 즉시 이런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안, 운영하는 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다음은 정진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후 위원 정진후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논의될 때에는 뭔가 용어가 정확하기를 바랍니다. 정부안이면 정부안 이러면 되는 것이지 애매모호하게 해놓고 '정부 기초안' 이렇게 해서 자꾸만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입장이면 정확하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앞으로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정책적 보완은 지금 보고서 7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인사정책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가 제시해야 된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못 박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개혁 또는 변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공무원의 인사정책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서 그걸 보완재로 쓸 것인지 이런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놓고 인사정책적 보완책을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내용의 결과는 사실상 이것을 동시에 논의해 가도록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정신이고 타당성이라고, 상식적 타당성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고 하면 이런이런 내용을 개혁하는데 인사정책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인사혁신처의 정책적 제시가 따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참 이게 난감한데요. 지금 우리 논의하고 있는 기구 이름이 공무원연금 관련한 특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따지면 참 이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굉장히 난감한 문제에 부딪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학연금은 법에 의해서도 공무원연금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때마다 사학연금법은 그에 따라서 연동돼서 동일하게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이견이 제출이 되니까 정부에서 '사학연금 손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을 바꾸게 되면 반드시 사학연금을 그와 연동해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만 하더라도 공·사립 간 교사 교류가 법에 의해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그대로 준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하나도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특위에서 이후 논의를 할 때, 사실상 사학연금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연금이 변화되고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어떤 의견도 전연 제출하지 못하는 가운데 공무원연금법에 연동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 문제에 대

해서 좀 더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정말 사학연금의 관리부서인,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배석을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같이 지켜보기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자신들의 연금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을 아무런 의견 제시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 법 형식적으로만 따라가는 이런 이상한 결과가 초래할 것이고 그에 대한 반발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누가 진다는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여기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계시고 인사혁신처장 나와 계십니다마는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이것 정부에서 통합적 논의를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호영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대타협기구에서 단일안이 나와서 국회에서 지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특위인 만큼 입법절차를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사실은 그것이 가장 베스트가 아니었나 싶은데 대타협기구가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고 아주 많은 회의와 여러 가지 이견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이제 실무기구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이해당사자는 정부와 공무원단체일 뿐만 아니라 물론 그 두 주체가 들어가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여와 야가 분명히 공히 주체여서 네 주체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와야 되고 마지막 법에 대한 입법권은 국회 특위가 갖고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복지부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분명하게 됐는데 저희가 결과보고를 마지막에 할 때 명시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대타협기구에서 여야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합의했던 것은 단일합의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단일합의안이 만들어질 경우 그 안에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약속은 했지만 저희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단일안을 합의해서 그것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다음은 배재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정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인데요.

오늘 활동경과보고 13쪽에 보면 노후소득보장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소득대체율 논의에서 소득을 생애주기 평균소득으로 볼 것인지 최종소득으로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정 노후소득 수준 및 공무원 노후소득 방안과 관련해서도 과세에 따른 연금수급액의 비교가 가능한 해외사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평가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금방 여쭈어 보니까 아마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대타협기구든 특위든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자료가 꼼꼼하게 우리 특위에 제출이 되어야지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준비하시는 것이 맞는지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하시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준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확보하셔 가지고 저희 특위 회의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주호영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우리 특위의 활동기한이 내일로써 1차 기한이 끝나고 오늘 연장 결정을 해서 25일간, 5월 2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무기구 논의를 지켜봐야 하고 또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서 기 의원님들이 제출한 10개가 넘는 법안을 모두 검토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원내대표단 간의 일정 합의내용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서로 특위 위원님들께서 상호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고 또 국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서 기간 내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